

16.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 학생의 교육 및 대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장애 학생”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조직) 장애 학생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 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3. 장애 학생을 위한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애 학생 도우미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 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및 보조 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등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항

제5조(구성) ①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할 센터장을 두며, 실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장애 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 학생 학습권 관련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업무협조) 위원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장애학생학습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